시 민

문서번호	도시관리과-311		
결재일자	2020.1.8.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
방침번호	행정2부시장 방침 제5호		

전문관	도시관리정책팀장	도시관리과장	도시계획국장	행정2부시장
<i>주택건축본부장</i>				
		주거정비과장		
협 조		공동주택과장		
		주거사업과장		
		도시계획과장		

『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』 조성을 위한

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



2020. 1.

서울특별시 (도시계획국)

▶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*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고
정 책 의 제 형 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		
	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	•		
정책수립	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			
	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			
정책집행	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			
	◆ 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		
정책홍보	 →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・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		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		
	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		

『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』 조성을 위한

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

주변 도시와의 단절 등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『아파트단지 조성기준』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- □ 주변과 단절된 "도시속의 섬"으로 아파트 공급 관리
 - 도시 가로망의 단절 및 경관 부조화
 - 단지 자체의 완결성으로 인한 폐쇄적 운영
- □ 사회적 문제(사회적 병리현상)의 원인 중 하나
 - 특정계층의 주택이라는 인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
 - 단일화되고 폐쇄적인 환경으로 다양성 및 창조적 사고의 결여
- □ 미래 주거문화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
 - 저출산·고령화. 1·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
 - 주민들의 삶의 방식 다양화
- □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수요 지속
 - 재건축 시기의 본격 도래 및 저층주거지의 아파트 단지화 진행
 - 쾌적성과 안전성, 재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선호하는 주택유형

도시속의 섬에서 **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으로**

Ⅲ 추진경위

- '17. 3.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내 "주거지관리분과" 신설
 - 인문, 사회, 도시, 건축,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(18인)
- '17. 4.~12. 도시계획 정책자문단(주거지관리분과) 논의(15회)
 -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,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
- '18. 2. 12. 부시장 보고(1차)
 - 도시재생본부장, 도시계획국장, 주택건축국장 등 참석
- '18. 3. 26. 유관부서 의견 수렴
 - 재생협력과장, 공동주택과장,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등 참석
- '18. 4. 2. 부시장 보고(2차)
 - 전문가 및 소관 실·국장 참석
- '18. 5. 24. 관련 실·국·기관 워크샵(1차)
- '18. 5. 31. 관련 실·국·기관 워크샵(2차)
 - 관련 실·국장 및 유관기관 임원 등 30여명 참석
- '18. 11. 27. 부시장 보고(3차)
- '18. 12. 26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보고
 - 단지 내 가로 개방성 담보방안, 경계부에서 단차로 인한 길의 연속성 훼손 방지책 등 보완
- '19. 03. 12. 세부지침 유관부서 실무회의
- '19. 04. 14. 도시·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(시장방침)

사전 아파트 단지 조화로운 공공기획단계신설 단 대체: 도시성 회복 단 건축 디자인 혁신 단 프로세스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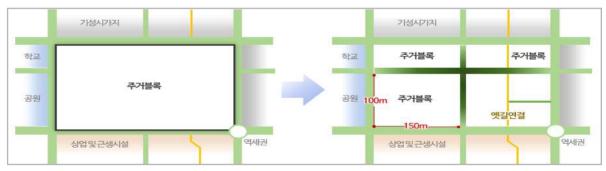
- '19. 09. 10. 부시장 보고(역세권 복합개발 방안)
 - 사전 공공기획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 확정
- '19. 11. 26. 부시장 보고(4차)
- '19, 12, 18, 도시계획위원회 보고

Ⅲ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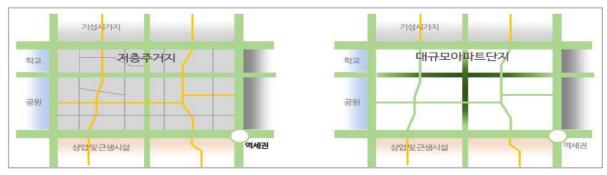
① 길의 연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 막혔던 길을 다시 연결

○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시 한 변이 100~200m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재구성하고 주변 가로와 연결



<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시 막혔던 길의 연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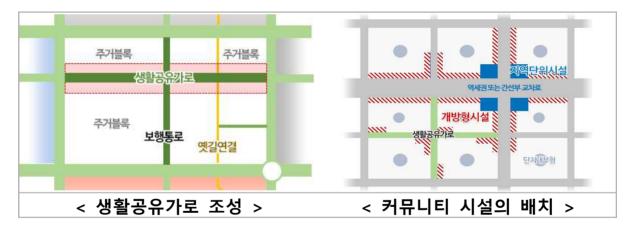
- 저층주거지 재개발시 기존 도시구조를 존중하여 기존 주요가로의보전 및 기능 유지, 옛길, 물길 등 보전
 - 집산도로 이상의 가로는 보전 또는 재구성
 - 주요 옛길, 옛 물길 등 전통적 도시조직 체계는 보전·복원



< 저층 주거지 재개발시 주요가로 보전 >

② 커뮤니티공간 조성 단지 내 길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공간 조성

- 다시 연결된 가로 중에 주요 가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생활공유가로로 조성
 - 생활공유가로는 도시계획도로·보차혼용통로·공공보행통로로 조성
 - 시·종점부는 인접 도로·대지와 동일레벨로 조성하고 오픈스페이스 확보
 -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정보제공. 모니터링 실시
- 생활공유가로에는 지역단위 및 개방형 단지단위 커뮤니티시설 배치
 - 지역단위 커뮤니티시설 :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▶중심지 및 역세권 연접블록, 도시계획도로변, 생활공유가로변 배치
 - 개방형 단지단위 커뮤니티시설 : 주민공동시설 중 외부에 개방하는 시설 ▶도시계획도로변, 생활공유가로변 배치



 커뮤니티시설은 저출산, 고령화 등 미래수요와 지역의 특성,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



③ 역세권 복합개발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개방성 향상

-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가진 역세권에 비주거/주거 용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기능 수행 및 주변 도시와 소통 강화
- 복합개발로 인한 계획이득의 일정 부분은 공공정책사업에 활용
 - 지역생활권에 부족한 생활SOC.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
- ⇒ 세부지침은 역세권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확정시행 예정 이며, 도시·건축혁신방안에 따른 사전공공기획과 연계하여 추진



< 역세권 주변블록 복합개발 >

④ 수요 맞춤형 주거 인구·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

-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평면과 단지조성
 - 기존의 3~5인 가구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구구조에 대응
 - 대규모 단지의 경우 블록별·동별 주동 특성화 검토(고령자, 육아, 독신 등)



⑤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

- 도시의 경관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가이드라인 마련
 - 아파트지구, 택지개발지구, 재정비촉진지구 등 지구 차원의 계획이 선 수립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용
 - 개별 단지 경관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준수



< 지구차원의 입체적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>

Ⅵ 행정사항

□ 기준의 적용

○ 적용대상 :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아파트

○ 적용시점 :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

- 다만,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·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기준의 성격

○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, 각종 위원회 심의 및 협의 기준

※ 참고 :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주요 적용 대상

 대상 사업	관련부서 및 기관		비고
내경 사 립	서울시	외부기관	<u> Ч</u>
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	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	자치구	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	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	자치구	도시 • 건축공동위원회
정비사업	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	자치구	도시계획위원회
재정비촉진사업	주거사업과	자치구	재정비위원회
도시개발사업, 택지개발사업,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	공공주택과	SH공사	도시계획위원회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

붙임: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1부. 끝.